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비관세장벽인가?

김동현, 전철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8년 미국의 Racey act를 시작으로 EU(2013), 호주(2016), 일본(2017)이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도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도입됨
- 이 제도의 취지는 주요 목재수출국의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된 목재로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있음
-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WTO에 무역상 기술방적으로(TBT)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인식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불법목재 교역제한 조치가 비관세장벽인지 구명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방법

□ 비관세장벽이란?

-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 원활한 무역에 지장을 주어 수입량을 억제하는 등의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함
- 기존의 무역이 관세로 수입량을 관리한 것이라면 비관세장벽은 제도, 규격 등 무역상 기술조치(TBT)로 수입량 자체에 영향을 줌

표 1. 비관세장벽 종류

종류	풀드원	UNCTAD	WTO	미국	EU	일본
세금차별	선택적 간접세	-	-	관세 외 세금	-	-
수입허가	-	-	-	자동허가 조치	수입검사	-
수령규제	WEEE, 무역 제한적 국영무역 정책	수령통제	수입에 관한 특별제한	수입금지, 수출허가, 수령규제	수령규제	-
통관장치	무역제한적 통관장치	-	-	통관, 세관, 통관장치	-	-
무역구제법	반덤핑 규제	-	-	-	반덤핑 등 무역구제법	-
가격제한	-	-	-	가격통제정책	-	-
독점행위	-	-	-	독점방지관행	-	-
기술장벽	행정 및 기술규제	기술조치	제품기준	표준, 검사, 라벨링, 안전(환경 등)	표준 및 기술적 요건	표준, 적합성평가 개도 원년차규정
수출제한	수출세	-	-	수출제한	-	-
정부보조	수출보조금 및 선별적 국내 보조금	-	-	수출보조금	보조금	-
정부보조	차별적 정부보조	-	-	정부보조금	정부조달	정부조달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 제한	-	-	투자장벽	투자관련 조치	무역관련 투자 규정
지적재산권	-	-	-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지재권 관련 조치	지재권 보호
서비스업 제한	-	-	-	서비스업 장벽	-	서비스 교역
전자상거래 제한	-	-	-	전자상거래 장벽	-	-
기타	지역적 영업관행, 제한적 이면체제	금융통제정책	기타 규제	로컬 컨텐츠 규정	제재목(침입수)	목재집
	선행적 통화정책	기타 조치	기타 규제	수입 벤처금 규정	목재집 관행	목재필자

□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의 비관세장벽 효과?

- 비관세장벽이 수입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물량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효과를 분석함
- 무역효과로서 무역대체는 제도의 도입으로 교역량이 감소하는 반면 무역전환은 제도 도입국 간의 교역량이 늘어남
-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는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므로 수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주요국 중 미국과 EU는 전세계 최대 목재 교역국 중 하나이고 이들 국가의 목재합법성 입증 체계 또한 상이하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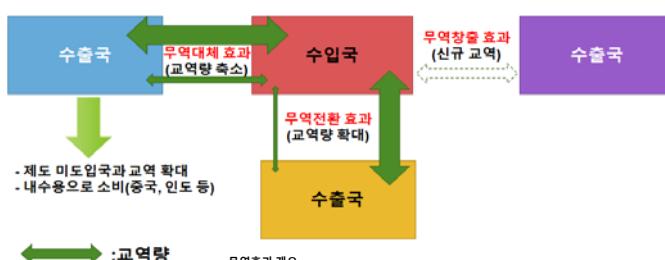


그림 1. 무역효과

□ 비관세장벽 구명을 위한 무역효과 분석

- 무역효과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적용함
- 중력모형은 교역국 간의 인구수, 국내총생산액 등 경제규모의 차이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점에 착안하여 교역패턴을 분석하는데 특화된 방법임
- 중력모형은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분석결과

산업의 구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목재 수입 주도형 국가로서 목재 생산자가 목재 합법성을 입증하는 Due care 체계임에 반해 EU는 목재수출 주도형 국가로 Due diligence 체계임

* 일반적으로 Due care 체계가 Due diligence 체계에 비해 느슨하다고 평가됨

표 2. 산업구조별 목재합법성 검증 체계

	GDP 중 목재 산업 비중	목재산업 중 주요 수요처 (건설업 비중)	목재산업 GDP 대비 무역수지 비중	합법성 시스템
United States (2008)	0.06%	26.9%	-8.22% (수입 주도)	Due care
EU (2013)	0.14%	33.0%	6.52% (수출 주도)	Due diligence
Australia (2014)	0.10%	59.8%	-3.03% (수입 주도)	Due care
Japan (2017)	0.09%	58.1%	-31.07% (수입 주도)	Due care
Republic of Korea (2018)	0.09%	34.2%	-	-

자료) OECD 국가별 산업연관표

주) 수입 주도형: 목재산업 GDP 대비 무역수지의 비중<0, 수출 주도형: 목재산업 GDP 대비 무역수지 비중 >0
합법성 검증 시스템: Due care(생산자가 합법성 입증), Due diligence(국가 시스템으로 합법성 입증)

표 3. 중력모형 추정 결과(EU)

	섬유판	종이	합판	원목 (월업수)	원목 (침입수)	원목 (월대림)	제재목 (월업수)	제재목 (침입수)	목재집	목재필자
상수	18.37 (28.35)***	19.42 (36.27)***	1.72 (2.58)***	12.60 (15.67)***	6.09 (6.70)***	2.62 (2.30)***	10.33 (20.21)***	12.69 (16.30)***	5.66 (5.26)***	3.19 (3.30)***
국내총생산액	0.11 (0.24)***	-	-	0.83 (12.18)***	1.50 (19.48)***	0.58 (6.13)***	0.71 (16.69)***	0.66 (10.94)***	1.61 (17.56)***	0.82 (10.63)***
국내총생산액 (1인당)	-	-	-	-	-	-	-	-	-	-
국내총생산액 (3인당)	-0.12 (-3.52)***	0.57 (11.06)***	-	-	-	-	-	-	-	-
인구수	-	0.50 (12.40)***	-0.04 (-0.66)	-	-	-	-	-	-	-
무역거리	-0.19 (-3.96)***	-0.23 (-5.47)***	-0.09 (-5.47)***	-1.27 (-1.99)***	-0.88 (-13.66)***	-0.10 (-13.34)***	-0.68 (-17.31)***	-0.36 (-8.32)***	-1.02 (-13.22)***	-
교역비용	-2.78 (-34.89)***	-3.33 (-48.49)***	-1.90 (-23.73)***	-1.47 (-15.32)***	-1.85 (-17.77)***	-0.87 (-24.63)***	-1.55 (-24.63)***	-2.28 (-24.38)***	-2.23 (-16.89)***	-0.96 (-10.57)***
생산량	0.06 (3.99)***	-	-0.03 (-1.26)	-	-	-	-	0.01 (0.78)	-	-
환경	-0.08 (-3.28)***	-0.07 (-6.38)***	-0.12 (-1.96)***	-0.06 (-5.30)***	-0.18 (-4.70)***	-0.21 (-5.30)***	-0.05 (-2.36)***	-0.19 (-8.46)***	0.13 (3.05)***	-0.13 (-3.78)***
제도 도입 (대 Global)	-1.92 (-12.49)***	-1.28 (-11.22)***	-1.07 (-7.16)***	0.33 (1.58)	0.22 (0.89)	0.91 (2.53)***	-0.13 (-1.05)	-0.88 (-4.15)***	0.15 (0.48)	-0.15 (-0.58)
제도 도입 (대 EU)	1.23 (7.06)***	0.91 (6.74)***	0.75 (4.48)***	-0.74 (-3.23)***	-0.66 (-0.23)	-1.97 (-5.15)***	-0.49 (-3.38)***	0.35 (1.49)	-0.70 (-2.13)***	0.12 (0.40)
(EU)간 내부거래	-	-	-	-	-	-	-	-	-	-

표 4. 중력모형 추정 결과(USA)

	섬유판	제재목(침입수)
상수	-26.46 (-1.24)	28.58 (-1.21)
1인당 국내총생산량	3.38 (1.70)*	-1.04 (-0.47)
무역거리	-0.24 (-1.29)	-
교역비용	-	-2.14 (-7.07)***
FTA 여부	0.27 (-0.81)	1.76 (3.89)***
제도 도입(대 Global)	-0.7 (-2.54)***	-1.28 (-4.08)***
제도 도입(대 EU)	-0.07 (-0.18)	0.51 (-0.80)

표 4. 목재합법성 검증체계별 수입량 변화율(비관세장벽 효과)

	미국(Due care system)	EU(Due diligence system)
섬유판	-50.30%	-49.80%
종이	-	-30.90%
합판	-	-27.40%
원목	-	-52.30%
활엽수	-	-65.40%
침엽수	-	-38.70%
열대림	-	-58.50%
제재목	-72.20%	-50.30%
활엽수	-	-
침엽수	-	-
목재집	-	-
PB	-	-
목재필자	-	-
평균	-61.30%	-46.70%

주) 우리나라의 합법성 검증체계는 기본적으로 Due care이나 실사조사를 포함하므로 Due diligence가 가미됨